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1월 23일 류중혁, 김영회 의원 발의 (9인 의원 찬성)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월 2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2회 부천시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8년 3월 14일) 상정·보 류
- 제143회 부천시의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(2008년 5월 20일) 상정·보 류
- 제150회 부천시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9년 2월 19일) 상정·보 류
- 제151회 부천시의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9년 4월 1일) 상정·의 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영회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신체적 장애나 한 부모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인한 경제적 인 어려움에 처해 국민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의료 급여 중단 위험에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 로써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새롭게 제정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규정함.(안 제2조)
- 지원내용은 지원대상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 함.(안 제3 조)
-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4조)
-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5조 및 제6조)
-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.(안 제7조 및 제8조)

다. 참고사항

○ 운영현황

·경기도내 자치단체 운영 사례(2008. 5월 현재)

| 시군명 | 조 례 명 | 지원대상 | 시 행 일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
| 경기도 |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| | • - |
| 안양시 | 안양시 저소득 취약 계층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| 건강보험료가 월1만원 미만인 세대로서 1.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세대 2. 모·부자세대3.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4. 만성질환자세대 | |
| 안산시 |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|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노 인세대, 장애인세대, 모부자 세대를 우선 지원 | |
| 고양시 |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|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65 세 노인가구와 장애인 또는 미성년 자 포함한 노인가구 | |
| 구리시 |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|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1. 65세 이상 노인세대 2. 경로연금수급권자, 장애수당수급 자, 모·부자가정보호대상자 등 법정 차상위계층 | |
| 오산시 |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|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 대로서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| 2007. 1.12. |

| 시군명 | 조 | 례 | 명 | 지 원 대 상 | 시 행 | 일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---|
| 화성시 | 화성시 치 건강보험. | | |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1.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2. 4급이하 장애인 또는 18세이하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하는 65 세 이상 노인가구 | 2007. 8. | 6. |
| 하남시 | 하남시 국민건강5 | | |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1.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2. 등록 장애인 3. 모·부자가정 세대 | 2007. 1. | 10. |
| 광주시 | 광주시 치 건강보험. | | |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1.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2. 등록 장애인 3. 모·부자가정 세대 | 200′ 4.10 | |
| 과천시 | 과천시 저 지원조례 |]소득통 | 통새계층 |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1. 65세 이상인 사람 2. 장애인, 모·부자가정 세대 3. 조손세대, 소년소녀가장세대 | 200′ 6.22 | |
| 김포시 | 김포시 저소득층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| | |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1.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2. 모·부자가정 세대 | 2007. 6.27. | |
| 파주시 |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| | |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| 2006. 6. | |

·전국 운영사례

2007년 8월말 현재 전국 60여개 자치단체에서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, 2009년 2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는 약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

○ 예산수반: 연간 약 122,616천원

○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세대 현황

·2007. 11월 기준

(단위: 세대, %, 천원)

| | | 보험료 지원 대상 세대 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구 · | 분 | 경감세대 소 계 | 등 록 장애인 | 모 자 가 정 | 부 자 가 정 | 소년소녀 가장세대 | 만 성 질 환 |
| 2,000원~ | 세대수 | 1,715 | 1,238 | 310 | 49 | 3 | 115 |
| 10,000원 이하 | 금 액 | 10,218 | 6,791 | 2,254 | 363 | 14 | 796 |
| 5,000원 미만 | 세대수 | 406 | 373 | 9 | 4 | 2 | 18 |
| | 금 액 | 1,023 | 907 | 25 | 13 | 8 | 70 |
| 5,000원~ | 세대수 | 1,309 | 865 | 301 | 45 | 1 | 97 |
| 10,000원 이하 | 금 액 | 9,195 | 5,884 | 2,229 | 350 | 6 | 726 |
| 비 율 | 세 대 | 100 | 72.18 | 18.07 | 2.86 | 0.18 | 6.71 |
| | 금 액 | 100 | 66.46 | 22.06 | 3.55 | 0.14 | 7.79 |

※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 자료 제공

·2009. 2월 기준 : 1,716세대 월 11,222천원

▶ 모부자가정 292세대, 장애인 1,300세대, 만성질환자 121세대, 소년소녀가장 3세대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【 1차심사시 】

| 질 의 내 용 | 답 변 내 용 |
|---|---|
| ○ 1만원 미만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과 체납현황은? | ○ 1,715세대중 체납세대는 약 15% 에 이름 |
| ○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 로 볼 수 있는가? | ○ 차상위계층중 장애인, 한부모가족 세대, 소년소녀 가장세대, 만성질환 세대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건 강 보험료를 체납하므로서 의료혜 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로 볼 수 있음. |
| ○ 제정취지는 공감하나 이는 결국 체납보험료 징수 주체인 보험공단 의 업무를 덜어 주는 측면도 있는데? | ○ 그런 측면도 있음. |

| 질 의 내 용 | 답 변 내 용 |
|---|--|
| ○ 타 시·군의 같은 조례를 볼 때 지원대상이 각각 다름. 경기도 조 례를 개정하여 그 지원범위를 넓 히고 시·군간 통일 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보는데? | ○ 일단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시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하고 경기도 조례 개정을 적극 건의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봄. |
| ○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있는데 시 차원에서 특별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? | ○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험료 경감 이나 결손처리 등 대책을 보험공단 과 적극 협의하겠음. |
| ○ 본 조례와 관련하여 경기도에 지원범위를 확대 등 통합을 건의 한 적은 있는지? | ○ 도의원에게 건의한 적은 있으며, 경기도에도 적극 건의할 계획임. 이 러한 과정을 위해 시간이 필요함. (이상 사회복지과장) |

【 2차심사시 】: 없음

▶ 경기도조례 개정건의 등 그간의 추진상황을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함.

【 3차심사시 】

| 질 의 내 용 | 답 변 내 용 |
|--|---|
| ○ 1만원 미만 건강보험료 납부세대 1,170세대중 체납자는 몇 %나 되 는가? | 0 1% . |
| ○ 장기 체납자만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가? | 제납사유가 각각 다르다고 보며, 국가사무이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서 고민해야 할 사안임. |
| ○ 경기도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? | O 너는 것으로 알고 있음. () |

【 4차심사시 】: : 없음

4. 토론요지

- 가. 반대토론
 - 2008. 3. 14. 1차심사시
 - ·2008. 1. 1부터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65세이상 노인가구에 도·시비로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음. 따라서 경기도 조례 개정을 적극 건의하여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 심사하는 것이 타당함.
 - 2008. 5. 20. 2차심사시
 - ·중앙정부에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를 확대할 계획 에 있으므로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 심사함이 타당함.
 - 2009. 2. 19. 3차심사시
 - ·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됨에 따라 조례안 의결시 장기요양보험료 감면규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므로 집행부 의견 수렴을 통한 종합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계속 심사하는 것이 타당함.
- 나. 찬성토론
 - 2009. 4. 1. 4차심사시
 - ·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보험료를 차감 지원하는 규정과 장기요양보험료 감면규정을 담아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봄.
- 5. 심사결과 : "수정의결"
-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| 의 번 | 안호 | 관련 제219호 |
|--------|----|-------------|
| 의 | 결 | 2009. 4. 2. |
| 년월 | 일 | (제151회) |

제안년월일: 2009. 4. 1.

제 안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고지됨에 따라 저소득세대에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감면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

○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저소득세대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'국민건강보험료'를 '국민건강보험료 등'으로 수정함.(제명, 안 제3조, 제6조 내지 제8조)
-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경감된 금액을 차감 하는 것으로 수정함.(안 제2조)
- 시행일을 2009년 7월 1일로 수정함.(부칙)

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중 '국민건강보험료'를 '국민건강보험료 등'으로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'국민건강보험료(이하 "보험료"라 한다)'를 '국민건강보 험료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(이하"보험 료 등"이라 한다)'로 수정한다.

안 제2조 중 '보험료'를 '국민건강보험료'라 하고, '다만,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'를 '다만,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'로 수정한다.

안 제3조 제1항 중 '보험료는'을 '보험료 등은'으로 수정한다.

안 제6조 제2항 중 '보험료'를 '보험료 등'으로 수정한다.

안 제7조 중 '보험료'를 '보험료 등'으로 수정한다.

안 제8조 중 '보험료'를 '보험료 등'으로 수정한다.

부칙 중 '2008년 7월 1일부터'를 '2009년 7월 1일부터'로 수정한 다.

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『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.』

신·구조문 대비표

조 례 안 수 정 안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 조 (목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신체적 장애나 한부모가족 환경 등의 이유로 「국민건 강보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따 른 국민건강보험료(이하 "보험료"라 한다)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저 ----- 국민건강보험료와「노인장기 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(이 소득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하 "보험료 등"이라 으로 한다. 제2조(지원대상) 시장이 보험료를 지 제 2 조 (지 원 대 상) 원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 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다음 각 호의 - 국 민 건 강 보 험 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(이하 "지 원대상자"라 한다)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 험료를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. 만, 법령 또는 다른조례나 단체 등으로부 1 ~ 4 (생략) 터 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 액 또는 경감 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 한다. 제3조(지원내용) ① 시장이 지원할 수 1 ~ 4 (현행과 같음) 있는 보험료는 지원대상자가 매월 납 제3조(지원내용)① -----부하는 금액으로 한다. ---보험료 ② (생략) 제4조(지원방법)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4조(지원방법) (현행과 같음) 제5조(지원대상자의 결정) (생략) 제5조(지원대상자의 결정) (현행과 같음) 제6조(사실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 제6조(사실조사) ① (생략) ②----보험료 등 -----

②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

개 정 안 조 례 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관 계 공무원에게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,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 사하게 할 수 있다. 제 7 조 (지 원 중 지) 제7조(지원중지)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보험료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. 등 -----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지원대상자가 보험료의 지원을 거부하는 2.----보험료 등 -----제8조(환수조치)① -----제8조(환수조치)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등을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부 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제9조(시행규칙) (현행과 같음) 부 칙 제9조(시행규칙) (생략) 2009년 7월 1일부터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신체적 장애나 한부모가족 환경 등의 이유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(이하"보험료 등"이라 한다)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지원대상) 시장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(이하 "지원 대상자"라 한다)로 한다. 다만,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.
 - 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세대
 -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
 - 3. 소년소녀가장세대
 - 4. 그 밖에 만성질환자세대

제3조(지원내용) 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보험료 등은 지원대상

- 자가 매월 납부하는 금액으로 한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과 지원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4조(지원방법)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매월 납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5조(지원대상자의 결정) 제2조의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 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을 검토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.
- 제6조(사실조사)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지원대상자를 일제조 사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보험료 등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에게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,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- 제7조(지원중지)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등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.
 - 1. 제5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
 - 2.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등의 지원을 거부하는 때
- 제8조(환수조치)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지 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

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. 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